| 의안번호 | 제 425호 |
|---|---|
| 의 결<br>연 월 일 | 2009년 월 일<br>(제 회) |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0일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425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0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1. 제안사유

○ 관계 법령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 도모

## 2. 주요내용

권한 위임사무 변경 : 총 51건(추가28, 삭제23)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추가7, 삭제 23
-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추가20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사무 : 추가1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별표1)

**<투자유치과> : 삭제 9건**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 ▸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및 협의
  - ▸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협의
  -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등
- 위의 사무가 30만 제곱미터 미만 일반산업단지인 경우시장·군수 사무

※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원관리과> : 삭제 11건**

-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삭제
  - ▸ 석유판매업(주유소·용제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고시 등
  -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신고수리, 행정처분 등
  -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등록·행정처분·등록요건고시 등
- 위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

※ 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천과> : 추가3건, 삭제1건**

- 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및 삭제
  - ▸보상금의 공탁,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추가)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추가)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삭제)
- 보상금액의 산정 지급통지 등 조문정비

※ 관계법령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광항공과> : 삭제 1건**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위임사무에서 삭제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여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및 일관성 유지

※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환경정책과> : 추가 4건**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추가
  -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등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필요

※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기타 근거법령 조항 등 정비**

- 회 계 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삭제 1건 포함)
- 산림녹지과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제3항 별표3)

**<방호구조과> : 추가 20건**

- 원거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
  - ▸ 소방시설업 등록·변경신고 등 6건
  - ▸ 방염처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5건
  -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등 6건
  -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신고 등 3건

※ 관계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별표4)

**<총 무 과> : 추가 1건**

- 내수면연구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위임하는 조항 신설

**3. 의안전문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투자유치과란을 삭제하고 회계과, 자원관리과, 하천과, 산림녹지과, 관광항공과, 환경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회 계 과 |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br>(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 |
| 자 원 관 리 과 | 1 |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
| | 2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권한 | |
| | | 가. 사업(변경)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
| | |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 동법 제4조 |
| | |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 동법 제7조 |
| | | 라. 지위승계 신고 | 동법 제8조 |
| | | 마. 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제9조 |
| | | 바. 과징금 부과징수 | 동법 제10조 |
| | |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동법 제12조 |
| | |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해임요구 등 | 동법 제16조 |
| | | 자. 청문 | 동법 제40조 |
| | | 차.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52조 |
| | 3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동법 제34조 |
| | 4 |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 |
| | |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제5항 |
| | |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 동법 제39조제6항 |
| | |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 동법 제40조제4항 |
| | |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한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 동법 제78조제4항 |
| | 5 |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 가.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청문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38조 및 41조 |
| | |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검사의 증인 | 동법 제32조 및 제33조 |
| | | 다. 보고 및 검사 등(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 동법 제34조 |
| | | 라. 개선명령 | 동법 제35조 |
| | |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 동법 제37조 |
| | |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계량기제작업자 및 자체수리 사업자를 제외한다) | 동법 제51조 |
| | 6 |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제8848호,2008.1.17> 제2항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자 원 관 리 과 | 7 |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동법 제18조제2항 |
| | 8 |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 동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
| | 9 |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 동법 제28조 |
| | 10 |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1조제1항 |
| | |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 동법 제6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 | |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78조제4항 |
| | 11 |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 | | 나. 보고 및 검사등 | 동법 제32조 |
| | |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41조 |
| | 12 |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 |
| | |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
| | | 나. 보고 및 검사 등 | 동법 제20조 |
| | |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동법 제28조 |
| 하 천 과 | 1 | · 지방하천에서 허가 · 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 · 수리 | 하천법 제5조 |
| | 2 |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 보수 · 시정 등 조치 | 동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
| | 3 |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동법 제14조 |
| | 4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 (시장 ·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 동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
| | 5 |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 · 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 동법 제29조 |
| | 6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 |
| | |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 동법 제30조제1항 |
| | |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동법 제30조제2항 |
| | |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 동법 제30조제10항 |
| | |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 동법 제30조제4항 |
| | | 마. 실시계획 인가 · 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 동법 제30조제5항 |
| | | 바. 인가내용 고시 | 동법 제30조제6항 |
| | 7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 · 보수 | 동법 제30조제7 · 8 · 9항 |
| | 8 | · 시장 · 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 · 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동법 제32조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동법 제33조 |
| | | 가. 토지의 점용 | 동법 제33조 제1항제1호 |
| | | 나. 하천시설의 점용 | 동법 제33조 제1항제2호 |
| | |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 동법 제33조 제1항제3호 |
| | |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동법 제33조 제1항제4호 |
| | |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동법 제33조 제1항제5호 |
| | |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
| | |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
| | |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
| | | 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
| | | 차.「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
| | |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
| 하 천 과 | 10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 동법 제33조제6항 |
| |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 | 동법 제33조제8항 |
| | 12 | ·지방하천의 점용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 동법 제34조<br>동법 시행령 제39조 |
| |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 동법 제36조<br>동법 시행령 제41조 |
| |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관리 | 동법 제48조<br>동법시행령 제53조 |
| |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 동법 제90조 |
| |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동법 제69조 |
| |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동법 제70조 |
| |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 동법 제27조제6항<br>동법 시행령 제27조 |
| |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 동법 제38조제1항 |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 | |
|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
| | | 다. 죽목의 식재 | |
| |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 동법 제38조제4항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 21 |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 동법 제46조제6호<br>동법시행령 제51조 |
| | 22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 동법 제47조<br>동법시행령 제52조 |
| | 23 |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조사·통지 | 동법 제76조 |
| | 24 |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물건 등의 사용·수용 | 동법 제78조 |
| | 25 |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 동법 제72조 |
| | 26 |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 동법 제89조 |
| | 27 |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승인 취소시 청문 | 동법 제91조 |
| | 28 |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98조 |
| | 29 |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61조 |
| | 30 | · 보상금액의 산정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
| | 31 | · 보상금 지급의 통지 | 동법 시행령 제8조 |
| | 32 |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 동법 시행령 제4조 |
| | 33 | · 보상금의 공탁 | 동법 제8조 |
| | 34 |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 동법 제9조 |
| | 35 |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
| | 36 | · 도유재산 용도폐지 | 동법 제11조 |
| 산 림 녹 지 과 | 1 | · 산림병해충의구제.예방에대한 조치명령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52조 |
| | 2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 |
| | |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사항의 명령 | 동법 제47조 |
| | | 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 동법 제47조 |
| | | 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통지 및 고시 | 동법 제47조제4항 |
| | 3 | · 종.묘생산업의 등록 | 동법 제16, 동법시행규칙제13조 |
| | 4 | · 종.묘생산업의 등록 취소 | 동법 제16조 |
| | 5 | · 보안림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보안림의 지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
| | | 나. 보안림의 지정해제 | 동법 제46조 |
| | | 다.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사무 | 동법 제44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
| | | 라. 보안림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동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53조 |
| | 6 |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법률제 5조 |
| | 7 | · 간선임도 설치계획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
| | 8 |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제3조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관 광 항 공 과 | 1 | ·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지정 및 변경 | 관광진흥법 제6조 |
| 환 경 정 책 과 | 1 |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
| | 2 |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동법 제17조 |
| | 3 |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 |
| | |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 동법 제41조제4항 |
| | |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 동법 제42조 |
| | 4 |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 |
| | |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동법 제43조제1항 |
| | |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 동법 제43조제2항,제3항 |
| | 5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 동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
| | 6 | · 보고 및 검사 등 | 동법 제82조 |
| | 7 |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 동법 제94조 |
| | 8 |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
| | 9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 동법 제68조 |
| | 10 |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납부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
| | 11 |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 |
| | |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 |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 동법 제27조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 경 정 책 과 | |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동법 제28조 |
| | |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동법 제32조제2항 |
| | |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동법 제33조 |
| | |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 동법 제37조 |
| | |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동법 제40조 |
| | |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 동법 제45조 |
| | |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 동법 제46조 |
| | |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동법 제48조 |
| | | 카. 청문 | 동법 제61조 |
| | |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 동법 제68조 |
| | |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기간의 연장승인 |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 | |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 동법시행규칙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 | | 거. 허가증의 재교부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 | 1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
| | |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명령 | 동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 | | 다. 보고 및 검사 | 동법 제13조 |
| | | 라.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16조 |
| |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사항 | |
| | |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 | |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 동법 제21조, 제22조 |
| | |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 동법 제23조 |
| | |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 동법 제25조, 제26조 |
| | |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 동법 제27조 |
| | |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수리 | 동법 제28조 |
| | |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 동법 제29조 |
| | |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 동법 제30조 |
| | |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 동법 제31조, 제33조 |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환 경<br>정 책 과 | 14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br>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br>나.「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br>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br>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별표8<br>〃<br>〃<br>〃 |

[별표 3]

#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3항 관련)

| 분 야 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
| 방 호 구 조 과 | 1 |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 |
| | |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 제11조 |
| | |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 동법 제8조제1항,제9조제1항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 동법 제10조 |
| | |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 동법 제17조 |
| | |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 동법 제12조 |
| | 2 |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 제6조 |
| | |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 제7조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법 제9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법 제10조 |
| | | 바. 등록취소 청문 | 동법 제32조 |
| | 3 |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률 제16조 |
| | |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률 제17조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법률 제19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법률 제35조 |
| | 4 |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등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률 제31조 |
| | |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률 제32조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법률 제34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법률 제35조 |
| | | 바. 등록취소 청문 | 동법률 제44조제2호 |
| | | 가. 등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동법 제16조제3항 |
| | |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동법 제16조제5항 |

[별표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4항 관련)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위임대상기관 | 근거법령 |
|---|---|---|---|---|
| 총 무 과 | 1 |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br>· 부교수이하 임용권 | 충북도립대 총 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br>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
| | 2 | · 5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자치연수원 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3 |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 · 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br>· 5급상당 지방연구관 · 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전보권 (연구소장 및 시험장장은 제외) | 농업기술원 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4 |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 보건환경연구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5 |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도로관리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6 |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산림환경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7 |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축산위생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8 |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농산사업소 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9 |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청남대관리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 10 |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내수면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회계과 | 1 | · 은닉도유재산 신고처리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6조 | 회계과 | 1 | ·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2 | · 도유잡종재산 관리 | 동 조례 제3조 | | 2 |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 (매각은 도의 사전 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 협의에 한함) | |
| | 3 | ·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매각 |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 | | | |
| 투자유치과 | 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 사무 | | 투자유치과 | | <삭제> | |
| | | 가.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 | <삭제> | |
| | |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동법 제18조제2항 | | | <삭제> | |
| | | 다.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의 고시 | 동법 제19조의2 | | | <삭제> | |
| | 2 | 라. 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에대한 협의 | 동법 제21조제2항 | | 2 | <삭제> | |
| | | 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협의 | 동법 제26조제3항 | | | <삭제> | |
| | |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검사의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 | <삭제> | |
| | |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공고 및 통지 | 동법 제37조제5항 | | | <삭제> | |
| | | 자.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 동법 제37조제7항 | | | <삭제> | |
| | |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 조치,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처분고시 | 동법 제48조 | | | <삭제>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자 원 관리과 | 1~5 | (생략) | | 자 원 관리과 | 1~5 | (현행과 같음) | |
| | 6 |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등록, 변경등록 및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신고수리, 석유판매업(주유소)의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가. 석유판매업에 대한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수리 | 동법 제12조 | | | <삭제> | <삭제> |
| | | 나. 석유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명령 | 동법 제13조제3항 | | | <삭제> | <삭제> |
| | | 다.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동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 | <삭제> | <삭제> |
| | 7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 동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6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 가.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 동법 제34조 | | | <삭제> | <삭제> |
| | | 나.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동법 제35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 | | <삭제> | <삭제> |
| | 8 |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및 행정대집행 | 동법 제30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9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검사 | 동법 제38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10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 동법 제40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11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12 |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29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13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 동법 제41조 | | <삭제> | <삭제> | <삭제> |
| | 14 ~20 | (생략) | | | 6 ~12 |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하천과 | 1~29 | (생 략) | | 하천과 | 1~29 | (현행과 같음) | |
| | 30 | 보상금액의 산정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 | | 30 | (현행과 같음) |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
| |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 동법시행령 제9조 | | 31 | (현행과 같음) | 동법시행령 제8조 |
| | 32 |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 동법시행령 제11조 | |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 동법시행령 제4조 |
| | <신설> | <신 설> | <신설> | | 33 | 보상금의 공탁 | 동법 제8조 |
| | <신설> | <신 설> | <신설 > | |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 동법 제9조 |
| | 33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 | 35 | (현행과 같음) | |
| | 34 | 도유재산 용도폐지 | | | 36 | (현행과 같음) | |
| 산림녹지과 | 1 |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산림녹지과 | 1 | (현행과 같음) |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 | 2 | · 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br>가. 관리인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의 명령<br>나. 천연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 의 수리<br>다. 천연보호림 등의 지정 및 해제, 통지 및 고시 | | | 2.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br>가. 관리인 지정 및 필요한 사항의 명령<br>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br>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및 해제, 통지 및 고시 | |
| | 3~8 | (생략) | | | 3~8 | (현행과 같음) | |
| 관광항공과 | 1 | (생략) | | 관광항공과 | 1 | (현행과 같음) | |
| | 2 | · 관광지 지정·조성계획 등의 고시 | 동법 제50조제4항,제52조제3항 | | <삭제> | <삭제> | <삭제> |
| 환경정책과 | 1~13 | (생략) | | 환경정책과 | 1~13 | (현행과 같음) | |
| | <신설> | <신설> | | | 14 |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 |
| | | <신설> | | | | 가. 고형연료제품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8 |
| | | <신설> | | | |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연료 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 〃 |
| | | <신설> | | | |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 〃 |
| | | <신설> | | | |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 〃 |

[별표 3]

#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현 행 | | | | 개 정 안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근거법령 |
| 방 호 구조과 | 1 | (생략) | | 방 호 구조과 | 1 | (현행과 같음) | |
| | <신설> | <신설> | | | 2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신설> | | | | 가. 등 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 | | <신설>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 제6조 |
| | | <신설> | | | |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 제7조 |
| | | <신설>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법 제9조 |
| | | <신설>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법 제10조 |
| | | <신설> | | | | 바. 등록취소 청문 | 동법 제32조 |
| | <신설> | <신설> | | | 3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신설> | | | | 가. 등 록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
| | | <신설>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률 제16조 |
| | | <신설> | | | |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률 제17조 |
| | | <신설>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 법 률 제19조 |
| | | <신설>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 법 률 제35조 |
| | <신설> | <신설> | | | 4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신설> | | | | 가. 등 록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
| | | <신설>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동법률 제31조 |
| | | <신설> | | | |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동법률 제32조 |
| | | <신설> | | | |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동법률 제34조 |
| | | <신설> | | | | 마. 과징금 처분 | 동법률 제35조 |
| | | <신설> | | | | 바. 등록취소 청문 | 동법률 제44조제2호 |
| | <신설> | <신설> | | | 5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신설> | | | | 가. 등 록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
| | | <신설> | | | |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동법 제16조제3항 |
| | | <신설> | | | |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동법 제16조제5항 |

[별표 4]

#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현 행 | | | | | 개 정 안 | | | | |
|---|---|---|---|---|---|---|---|---|---|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위임대상기관 | 근거법령 | 분야별 | 일련번호 | 사 무 명 | 위임대상기관 | 근거법령 |
| 총무과 | 1 | (생략) | | | 총무과 | 1 | (현행과 같음) | | |
| | 2 | (생략) | | | | 2 | (현행과 같음) | | |
| | 3 | (생략) | | | | 3 | (현행과 같음) | | |
| | 4 | (생략) | | | | 4 | (현행과 같음) | | |
| | 5 | (생략) | | | | 5 | (현행과 같음) | | |
| | 6 | (생략) | | | | 6 | (현행과 같음) | | |
| | 7 | (생략) | | | | 7 | (현행과 같음) | | |
| | 8 | (생략) | | | | 8 | (현행과 같음) | | |
| | 9 | (생략) | | | | 9 | (현행과 같음) | | |
| | | | | | | 10 | 6급이하 지방공무원 (연구사 포함)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 내수면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 관계법령 발췌

## 공 통

###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투자유치과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6>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6>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②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③승인을 얻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전문개정 2007.4.6]

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4]

**제22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개정 2007.10.4>)**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에는 제21조제2항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9, 2007.10.4, 2008.12.31>

③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자원관리과**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 (등록의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4조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를 명하거나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대집행)할 수 있다.

②~③ "생략"[전문개정 2009.1.30]

제33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대체연료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3, "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 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보며, 제11조 중 "제10조"는 "제33조"로 보고, 제12조 중 "석유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34조 (등록의 취소 등)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 11.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35조 (과징금)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제3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

34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4항 또는 제33조제3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 제39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전문개정 2009.1.30]

제40조 (청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34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1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사용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생략” [전문개정 2009.1.30]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생략”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4. “생략”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3. 및 ④~⑥ “생략”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1.~6. 및 ⑧~⑬ "생략"[전문개정 2009.5.1]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생연료유판매소를 제외한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15조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석유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내지 2."생략"
3. 석유판매업(제2호를 제외한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만 해당한다):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17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18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40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등) ① 내지 ② “생략”

③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④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중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⑤~⑥ “생략”

⑦ 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사업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⑧~⑩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41조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35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전문개정 2009.5.1]

제42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① 내지 ② “생략”

③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행정처분 기록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전문개정 2009.5.1]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③ ~ ⑤ "생략"

## 하 천 과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보상금의 공탁)**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들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 (등기 등)** ①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생 략

###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제3조 제7항에 따라 보상청구서

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 (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광항공과

## □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 3.25>

② ~ ④ <생략>

④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 ~ ⑤ <생략>

**환경정책과**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6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2. 31]

[별표 8]<개정 2007.12.31>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6 관련)

1.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준수사항 (가~라. 생략)

마. 고형연료제품 제조자가 고형연료제품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하려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인증기관에**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공급계획서를 제출하고, 공급계획의 내용 중 사용자, 사용시설, 공급기간, 공급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공급변경계획서를 제출할 것

2.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가, 다 생략)

나.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사용연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서를 제출할 것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10일 이내에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마.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면 그 사용시설의 개선 조치를 한 후 다이옥신 배출량 검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검사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면 사용시설의 개선내용, 다이옥신 검사결과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계획을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방호구조과**

##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설계도면·시방서·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이하 "감리"라 한다)하는 영업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2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기술인정 자격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염처리업)

**제14조 (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방염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방염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파산법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5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5.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동안은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관리업)

**제29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관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관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30조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44조 (청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자격의 취소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취소
4.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취소

##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제16조 (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거나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탱크시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4항 각호의 1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허위로 하거나 이 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 탱크시험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탱크시험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회 계 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군수에게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림녹지과

제4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이나 수목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산림 안 식물의 유전자와 종(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관리가 필요한 산림
2. 시험림 :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
3. 보호수 :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노목)·거목(거목)·희귀목(희귀목).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2조 (병해충등의 예방·구제) ① 산림소유자는 병해충이나 동물(이하 "병해충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병해충등의 예방·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이나 토지에서도 예방·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산림이나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에 병해충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병해충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산림관리자 또는 산림사업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 외의 지역에 있는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에게도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 총 무 과

###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